소독 방법(제20조제5항 관련)

1. 소독종류별 실시방법

종류	방법	소독목적물	비고
약물	1. 생석회를 사용하는 때에는	축사의 바닥·분뇨	•사람과 가축에 직
소독	소독 목적물에 소량의 물을	• 분뇨구 • 오수구 •	접 접촉되지 않도
	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	습윤한 토지 등	록 한다.
	포한다.		
	2. 석회유(생석회와 물을 1 : 9	축사의 벽・바닥・	∘뿌릴 때에는
	의 비율로 섞은 것)를 사용	울타리・토지 등	고루 저으면서 사
	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		용한다.
	충분히 뿌린다.		
	3. 표백분을 사용하는 때에는	제1호와 같다.	∘표백분은 광선 및
	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		습기에 노출되지
	다.		않은 것을 사용한
			다.
	4. 표백분수(표백분과 물을 1:19	제2호와 같다.	•표백분은 광선 및
	의 비율로 섞은 것)를 사용		습기에 노출되지
	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		않은 것을 사용한
	충분히 뿌리거나 바른다.		다.
	5. 석탄산수(석탄산과 물을 3 :	동물의 다리・사체,	•뿌릴 때에는 충분
	97의 비율로 섞은 것)를 사	축사, 금속성기계 또	히 섞어서 사용한
	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	는 기구, 가죽으로	다.
	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	만든 기구 등	•알카리성 용액이
	을 이에 담근다.		있는 경우에는 이
			를 물로 씻은 후
			에 사용한다.
	6. 승홍수(HgCl ₂ , 이염화수은	동물의 다리・몸체	•금속성의 기구나
	의 수용액으로서, 이염화수	(소는 제외한다)ㆍ사	기계에는 사용하
	은, 염산 및 물을 1:10:189	체, 축사, 기구・기	지 않는다.
	의 비율로 섞은 것 또는	계류(금속성인 것은	•승홍수는 비금속류
	1:1:1,000의 비율로 섞은	제외한다) 등	의 용기에 사용한
	것)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		다.
	목적물에 뿌리거나 소독목적		

물을 이에 담근다.		111 and 1 2 and 1
7. 포르말린수(포르말린과 물		
을 1 : 34의 비율로 섞은		
것)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		간 이상 담근다.
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	으로 만든 기구 등	
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.	り、 <u>ろ</u> 11 、	
8. 크레졸비누액(3~5%)을 사		
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		
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		
을 이에 담근다. 9. 염산식염수(염산, 식염 및	<u> </u>	
물을 1:5:44의 비율로 섞		
은 것)를 사용하는 경우		
L 次/担 川るりに 何丁		
가. 염산식염수에 소독목적물	기즈르(새키즈 . 여자	。6〕
을 담근다.	가죽·산적가죽 등)	
		싱을 소독할 수 있 -
나. 흐르는 물에 소독목적물	처연케이싱	다.
을 충분히 수세하여 염분	□ □ /川 O	
을 제거한 후 18℃ 염산식		
염수에서 2시간 이상 침적		
한 다음 중탄산소다 용액		
(0.8% 이상)을 채워서 소		
독이 종료된 케이싱		
(Casing)을 30분간 중화한		
다. 다. 소독목적물에 염산식염수	처여케이시 ㅠ자의	
다. 소득독식물에 함산식함무 를 채운뒤 1시간 이상 그		
	/	
대로 둔 후 중탄산소다용		
액(0.8% 이상)과 교체하여		
다시 30분 이상 둔다.		
10. 수산화나트륨 그 밖에 알		
칼리 수용액을 사용하는 때	• 문뇨저장용기 등	
에는 2%의 수용액을 만들		
어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		

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		
담근다.		
11. 알콜(70% 이상) 또는 승	가죽류	
홍(1%)에 적신 탈지면으로		
충분히 닦는다.		
12. 탄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		
<u>↑</u>	_	
가. 2%의 탄산나트륨이 되게	뼈·가죽류	
하여 소독목적물에 충분히		
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		
에 담근다.		
나. 0.1% 실리콘산나트륨을	항공기만 해당한다	
첨가한 4% 탄산나트륨 수		
용액으로 씻어 내거나 뿌린		
다.		
13. 차아염소산나트륨(유효염		
소 4% 이상)을 사용하는 경		
우		
가.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	육류・한약제품 등	
(40ppm)을 소독목적물에	식용으로 제공하기	
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	위한 축산물의 포장	
물을 이에 뿌린다.	•용기, 비식용 축산	
	물의 포장・용기 및	
	검역시행장	
	천연케이싱	
나. 흐르는 물에 소독목적물		
을 충분히 수세하여 염분		
을 제거한 후 차아염소산		
나트륨 500배 희석액에		
18℃에서 2시간 이상 침		
적한다.		
다. 소독목적물에 차아염소산	천연케이싱 포장 용	
나트륨 500배 희석액을 채		
운뒤 2시간이상 그대로 둔	,	
다.		
14. 올소페실페닌산나트륨용액	컨테이너	
(물 1리터에 올소페실페닌		

		ı	
	산나트륨을 10.2그램 이상		
	섞어 그 온도를 16℃ 이상		
	으로 한 것)을 소독목적물		
	에 충분히 뿌린다.	11. 7 1.0	
	115 이상화역소(CIO)。3% 이	분뇨구ㆍ사체	
	》 상)를 사용하는 경우	2. 실내·축사·항공 	
	그가. 이산화엽소(3%)와 물을	기내	
	1: 99의 비율로 섞은 것	3. 기계·기구·울타	
	그 꼭 사용하는 때에는 소목		
	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	뼈·가죽류·모피	
	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.	류・뿔・육류 등	
	나. 이산화염소(3%)와 물을	5. 탈취·악취제거 물	
	1: 199 내지 299의 비율	건	
	로 섞은 것을 사용하는 때	5. 출입구 발판소독ㆍ	
	에는 충분한 양을 소독목	가축의 몸체	
	적물에 뿌리거나 소독목적		
	물을 이에 담근다.		
	다. 이산화염소(3%)와 물을	가축만 해당한다.	
	1 : 49,999 내지 99,999		
	의 비율로 완전히 희석한		
	후에 이를 동물에게 먹인		
	다.		
	16.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	허가 시 정한 소독	
	서 규정한 사항 외에 「약	목적물	
	사법」 및 「동물용 의약품		
	등 취급규칙」에 따라 검역		
	본부장으로부터 제조품목허		
	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		
	은 소독제는 그 용법에 따		
	른다.		
훈증	1. 산화에틸렌 가스멸균기 소 1	. 우황ㆍ사향	
소독	독 2	2. 녹용 및 식용으로	
	가. 압력: 상압(1kg/c㎡)	제공하는 한약재	
	나. 온도: 상온 3	3. 그 밖에 식용에 제	
	다. 시간: 4시간 이상	공하는 것	

	라. 산화에틸렌을 기화할 것		
	마. 최종제품의 잔류농도는		
	50ppm 이하일 것 2.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:	1 실내 및 축사	◦내부까지 소독핰
	창고 안에서 실시하거나 비		
	일 등을 사용하여 밀폐한 후		에는 진공장치를
	· 훈증소독을 실시한다.		
	가. 1세제곱미터당 포르말린(4	 5. 현 1 1 2 1 6 4 도모이 터 시크 	· 사도중되기 보이저
	0%) 53밀리리터, 과망간	4. 궁물의 달 / / 표	
			하지 않도록 13℃
	산칼슘 35그램을 섞어 기 화한다.		
	나. 시간: 7시간 이상	장에 사용된 재료	
증기	, , , , , , -	<u> </u>	이 네이 이 크리크 이
	소독목적물을 소독기 안에서		
소독	1시간 이상 120℃ 이상의 증	이와 심득된 물건	
물끓임	기에 접촉시킨다. 소독목적물 전부를 물속에 넣	오. ㅁㅍ. ㅍ레. ㅋ	실시한다.
소독	어 1시간 이상 끓인다.	フ・・	
25	이 1시신 이경 중인다. 		
		공사료 및 이와 접	결시안나.
ਸ ਼ ਮ	1 포 1~ 9미리 기시 0 9미리	<u>촉된 기구</u> ㅂ. 까지 ㄷ	. ㅅ ㅠㄴ 레키이 ㅂ
	1. 폭 1~2미터, 깊이 0.2미터	七五· 包盆 亏	·소 또는 돼지의 분
소독	길이의 구덩이를 파서 발효		뇨를 소독하는 때
	소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		에는 깔짚에 생석
	는 그 안에 소독용 생석회를		회를 혼합하여 충
	뿌린 다음 병원체에 오염되		분히 발효시킨다.
	지 않은 깔짚 등을 채우고		
	그 위에 소독목적물을 쌓는		
	다. 그 표면에 생석회를 다		
	시 살포한 후 병원체에 오염		
	되지 않은 깔짚 등으로 덮고		
	그 위를 흙으로 덮어 1주일		
	이상 발효시킨다.		
	2.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된 오	제1호와 같다.	
	물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		
	그 시설에서 소독목적물에		
	생석회 등을 살포한 후 1주		
	일 이상 발효시킨다.		
	_ , = , = , :		

자외선	소독목적물을 15와트의 자외	건조녹용, 옷・모포
소독	선살균 등으로부터 50센티미	•포장 등
	터 안에 두고 1~2분 동안	
	자외선이 소독목적물에 골고	
	루 쬐도록 한다(자외선소독기	
	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	
	의 사용법에 따른다).	
기구・	「약사법」 및 「동물용 의약	허가 시 정한 소독
장치 등	품등 취급규칙」에 따라 검	목적물
을 이용	역본부장으로부터 제조품목	
한 소독	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	
	받은 기구・장치 등을 이용	
	한 소독은 그 용법에 따른다.	
분무	검역본부장이 허가한 구제역,	차량・축사・신발・
소독	조류인플루엔자의 용법과 용	옷 등
	량이 있는 소독제를 희석한	
	후 5초간 소독목적물에 분무	
	한다.	

비고: 위에서 규정한 소독 외에 가축방역 또는 지정검역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별 도의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독을 하거 나, 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다른 소 독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

2. 소독대상별 소독방법

- 가. 축사의 바닥과 흙을 소독할 때에는 바닥에 소독용 생석회(CaO)를 뿌리고 깊이 0.3미터 이상의 흙을 판 후 다시 생석회를 뿌리고 깨끗한 흙을 넣는다. 파낸 흙은 소독하여 매몰한다. 다만, 브루셀라병 및 가금콜레라의 경우에는 흙을 파지 않고 생석회·포르말린수·크레졸수 등 소독약제를 충분히 뿌린다.
- 나.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 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나 정밀검사의 결과가 있는 물건을 운반하는 때에는 승홍수·석탄산수·포르말린수·크레졸수 등 소독약액에 담근 천으로 병원체를 누출시킬 위험이 있는 눈·코·입·항문 그 밖의 부분을 잘 막아 오물의 누출을 방지하고, 동 소독약액에 담근 거적 등으로 전체를 감싸도록 한다.

- 다.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·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이동 중에 분뇨 그 밖의 오물을 누출시킨 때에는 승홍수·석탄산수·수산화나트륨 그 밖의 소독약제 등으로 누출물 및 이에 오염된 장소를 충분히 소독한다.
- 라. 탄저·기종저 등 아포(芽胞)를 형성하는 병원체를 없애기 위하여 물건 등을 약물소독하는 경우에는 승홍수·포르말린수·염산식염수·수산(옥살산) 또는 염산을 더한 석탄산수로 소독을 실시한다.
- 마. 차량·선박·항공기 등의 운송수단과 수송용기 등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.
 - 1)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장소에서 이동하는 차량 또는 해당 지역에 출입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석 등 차량 내부를 소독제로 소독한다.
 - 2) 가축·지정검역물·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체의 오물을 제거하고 세차를 한 후 하부·측면·상부 및 적재함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, 그 밖의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하부·측면·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.
 - 3)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·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선박·항공기에 대하여는 그 가축 또는 사체가 있었던 장소 및 그 주변장소에 대하여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.
 - 4) 가금류 수송용기에 대하여는 차량 등에서 분리하여 오물을 제거하고 씻은 후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.
- 바. 차량의 외부, 바퀴 및 흙받이가 소독약으로 젖을 수 있도록 소독해야 하며,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워야 하고, 2~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한다.
- 사. 소해면상뇌증의 원인체인 이상프리온단백질을 약물소독하는 경우에는 유효 염소농도 2%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2노르말(N)농도 수산화나트륨 으로 섭씨 20도에서 1시간 이상 실시하거나 동 소독약에 24시간 정도 담가 둔다.
- 아. 소독약은 제품별로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소독약과 섞어서 사용하지 아니한 다.
- 자. 소독약의 누출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한다.